

# 조선시대 서책의 교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ofreading of Books in the Joseon Dynasty

장 원 연(Jang Won-Yeon)\*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교정에 대한 賞罰   |
| 2. 주제별 문헌의 교정자 | 6. 교정의 절차 및 방법 |
| 3. 교정 참여인원     | 7. 맺음말         |
| 4. 교정관련 용어     | <참고문헌>         |

## < 초 록 >

조선시대 중앙에서는 校書館, 鑄字所, 校正廳, 實錄廳 등 출판에 전담한 기관이 있었고, 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는 아니었으나 司譯院이나 內醫院, 觀象監 등에서도 관련 분야의 서책을 왕명에 의해 간행하였다. 이러한 기관에서 간행되는 서책은 반드시 교정의 단계를 거쳤고, 교정은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본이 완성되어 반사될 때 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중앙관서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찰을 비롯한 문중과 書院, 私家에서 출판되는 간행물 역시 반드시 교정의 과정을 거쳤으며, 편집에서부터 인출이 완료될 때까지 상호간의 토론과 질정을 통하여 철저한 교정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이러한 출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정을 史料 등 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아울러 책이 완성되는 단계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 이를 담당했던 기관과 교정 참여 인물을 분석함으로써 출판에 있어서 교정의 역할과 과정별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현존 자료에 나타난 기록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要語: 校正, 校勘, 校正刷, 初見, 再見, 文集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2002zang@hanmail.net)

접수일: 2009년 6월 7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8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15일

<ABSTRACT>

In the Joseon Dynasty(朝鮮), there were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took charge of publications, such as Gyoseokwan(校書館), Jujaso(鑄字所), Gyojeongcheong(校正廳), etc., and several other government agencies which published books in various subject fields, following the kings' orders, such as Sayeokwon(司譯院), Naeuiwon(內醫院), Gwansanggam(觀象監) and so on. The books published in these organizations were continuously proofread until the final complete editions could be distributed.

The books locally published by the families(門中), Seowon(書院), and Buddhist temples were also always proofread, and the proofreading was very thoroughly done with discussions and corrections during the entire process of editing through final printi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proofreading performed in various stages of publishing by examining historical documents, and confirmed the roles of proofreading and their differences in stag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organizations and people in charge of proofreading.

Key words: Proofreading, Gyeojeongbyeo, Initial viewing, Second viewing, Munjip

## 1. 머리말

오늘날 校正의 의미는 오자나 탈자를 바로 잡는다는 뜻으로 원고와의 대조를 통한 書寫, 컴퓨터를 통한 입력, 인출과정에서의 실수를 바로잡는 일을 가리킨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어떤 책에서 訛傳된 글자나 구절을 찾아 증거를 밝혀 証訂하는 것이다.<sup>1)</sup>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서책을 출판할 때는 반드시 인출 전에 원고를 교정하고 인출 후에 다시 점검을 거쳐 최종 출판물을 완성하였다.

조선은 개국초부터 文을 숭상하여 서책의 간행과 보급에 힘을 기울여 고려로부터 계승한 인쇄술을 더욱 발전시켰다. 발달된 인쇄술을 바탕으로 찍어낸 인본의 정교함은 중앙관서의 인본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는 글을 잘 쓰는 書寫者와 숙련된 刻手 그리고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교정에 임할 수 있는 많은 문신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교정이 이루어졌다. 비록 발달된 인쇄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출판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아주지 못하면 정교한 인본을 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중앙관서에서는 印頒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監校, 監印 및 校勘하는 이를 두고 이들에 대한 상벌규정까지 마련해 두었다. 출판물의 편집에서부터 인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교정자는 내용의 정확성과 인출본의 정교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간행물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또 각 지역과 기관에서 간행하는 문집, 족보, 불경 등 다양한 종류의 서책 또한 그 주제와 성격에 따라 교정자를 선정하여 오랜 기간에 걸친 교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과 여러 주제에 걸쳐 이루어지는 출판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책의 간행과 각 단계별 과정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서책의 권수나 권말에 교정참여자를 기록하고 있는 322종(儒家書 222종, 佛經 58종, 族譜 42종)의 서책과 문집에 수록된 간찰, 간행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刊役日記’, 그리고 史料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서적의 類別로 교정에 참여한 교정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교정의 방법과

1) 안병희, “석보상절의 교정에 대하여,” 『국어학』 제2집(1974), 17.

절차를 예시를 통하여 확인하여 전통시대의 교정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하였다.

## 2. 주제별 문헌의 교정자

조선시대에 간행된 서책의 권수와 권말 간기 부분에 종종 刊役に 참여한 工匠과 함께 교정자를 기록한 경우가 있어서 이들에 관해 개략적으로나마 살펴 볼 수 있다. 교정자의 신분은 간행주체와 간행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서책의 주제와 간행기관을 중심으로 교정자와 그들의 신분을 살펴보았다.

### 2.1 문집·족보

私家에서 간행된 서책은 문집과 족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대부분 자손이나 문인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조사한 서책의 교정기록을 보면 교정자의 관직이나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중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만 추정하면 문집의 교정자는 관직이 없는 幼學이 대부분이며, 족보의 교정은 同姓의 자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관서에서 간행되는 문집의 경우는 주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의 문집이 중앙의 명으로 그 지역에 파견된 관리의 주관 하에 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정자 또한 검증된 지식인으로서 인근의 生員·進士를 비롯한 전·현직 관원이 동원되었다.

### 2.2 불경

지방의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의 교정은 승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교정자의 이름을 法名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된 사찰관

불서 중에서 범명이 아닌 이름을 쓰고 있는 경우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sup>2)</sup> 사찰관 불서 역시 교정자의 신분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만 이 중에는 施主者나 간행 사찰의 住持, 大禪師로서 참여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sup>3)</sup> 조선초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불서는 승려뿐만 아니라 문신들이 교정한 경우도 많이 있다.<sup>4)</sup> 여기에는 집현전 출신 학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노사신, 강희맹, 한계희 등은 세조 2년에 집현전이 혁파된 후에 세조의 명으로 불전간행 사업에 많이 참여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1642년에 간행되는 『俱舍論頌疏抄』의 교정에도 崔灝, 李克敏, 尹弼商 등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鈔詳集記』의 교정도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 2.3 중앙관서 간행본

중앙관서의 간행본에 대한 교정은 간행을 주관하는 해당 관서의 소속관원과, 奎章閣의 抄啓文臣, 成均館 儒生, 文臣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앙의 간행물은 왕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교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英·正祖年間に 간행된 御製·御撰書의 교정은 중앙의 주요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직으로 당시의 저명한 문신들로 구성되었고, 성균관 유생이나 초계문신 등 아직 학문이 완숙하지 않은 초학자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1759년 『御製續自省編』의 간행을 예로 들면, 兵曹參判으로 義禁府事를 겸하고 있는 蔡濟恭을 비롯하여 戶曹參議 元仁孫, 春秋館修撰 南泰著 등 13명의 문신이 교정관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2) 1908년에 간행된 『觀世音菩薩大宇大明王陀羅尼神呪經』에 金顯來, 金在旭 등 6명의 교정자가 기재되어 있다.

3) 1569년 安心寺板 『禪門拈頌集』과 1570년의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은 대선사 雪峯이 교정하였고, 같은 사찰에서 1569년에 간행한 『眞言集』은 대선사라는 기록은 없지만 이 역시 설은이 교정한 것으로 대선사의 신분이었을 것이다. 또 1707년 『禪門拈頌』의 再校와 三校는 각각 대선사 志安과 圓照가 하였다.

4) 1461년에 간행된 『金剛鉀顯性錄』의 校勘은 盧思愼과 □□寺住持인 海超와 興德寺住持 雪俊 등 儒臣과 승려가 함께 하였으며, 1462년 『眞實珠集』은 尹弼商, 盧思愼, 韓繼禧 등의 문신들이 교정하였다.

은 弘文館과 春秋館 등에 소속된 관원으로 간행시에 별도로 교정관에 내정된 자들이었다. 1795년의 『御定人瑞錄』의 교정에는 校閱者 20명과 校印者 12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중 교열자에 대해서는 관직, 나이, 가족관계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70세 이상으로 학문이 완숙한 老臣들로 구성되었고, 領議政과 弘文館大提學, 春秋館, 藝文館, 奎章閣直提學, 觀象監, 五衛都摠府都摠管 등의 관직을 겸하고 있는 문신들이었다.

## 2.4 醫學書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유교적 지식 외에 특정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서적의 교정에는 별도의 교정관이 내정되었다

조선시대 醫書의 간행은 대부분 內藥房이나 內醫院의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간행하였다. 임란직후 1608~1615년에 내의원에서 훈련도감자로 간행한 의서의 監校에는 내의원 소속 관원 두 명이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광해군 3(1611)년의 실록 기사에는 의서 교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藥名과 처방은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사람의 목숨에 관계가 되는데... (중략) 본원에 별도로 局을 설치하여 활자로 인쇄하여 과거에 醫書를 인쇄해 낼 때처럼 醫官이 監修하고 校閱한다면 반드시 일의 성취가 빠르고 착오가 생길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sup>5)</sup>

이 기사에서 의서는 사람의 목숨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정은 의관이 맡아야 함을 설명하였고, 의관들이 교정을 맡게 된 경위를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내의원에서 간행된 의서의 교정은 주로 李絡과 李希憲, 尹知微 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李絡은 內醫院 判官과 副奉事로써 1608년 『醫林撮要續集』과 『診解胎産集要』의 간행에 李希憲과 함께 監校를 맡았었다. 그러나 이후 의서 간행의 교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李絡은 의서 인출의

5) 『光海君日記』, 光海君 3年 11月 21日.

감역관으로 광해군 때 東班에 사용되었고,<sup>6)</sup> 이후 1619년에는 劑藥官으로 兒馬를 하사받기도 한 인물이다.<sup>7)</sup> 1613년부터 간행되는 의서의 감교는 이락이 빠지고 尹知微가 참가하여 이희헌과 함께 감교를 맡았다. 이들 두 사람이 감교를 맡아 간행한 의서는 1613년 『纂圖方論脈訣集成』·『東醫寶鑑』·『辟疫神方』·『新纂辟瘟方』 4종과 1615년 『萬病回春』·『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2종으로 총 6종이다. 참여서의 직책은 내의원 直長·僉正·副奉事를 맡고 있었지만, 이희헌은 이후 1619년에는 御醫에 제수되었다.<sup>8)</sup>

임란전에는 幼學의 신분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다. 1417년에 간행된 『鄉藥救急方』의 교정은 成均館幼學 蔣淳과 朴暄이 맡았고, 1523년의 『救急易解方』은 幼學 沈毅剛이 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이들 역시 의학에 조예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5 譯學書

譯學書는 隣近國과의 외교적 임무수행에 필요한 언어를 익히기 위한 외국어 학습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서적은 주로 司譯院에서 간행을 주관하였다. 사역원에서 간행한 역학서는 漢語, 蒙古語, 倭語, 淸語 등에 관한 것이며 『朴通事新釋』, 『捷解蒙語』, 『重刊老乞大』, 『重刊捷解新語』 등을 간행하였다. 이 책들의 교정은 모두 사역원에 소속된 역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748년에 간행된 『重刊捷解新語』의 권말에는 ‘戊辰(1748)改修時考校官’으로 朴尙淳, 玄德淵, 李昌基, 鄭道行, 黃大中, 玄泰衡, 崔學齡, 崔壽仁 등 9명과 이어서 ‘辛丑(1781)重刊時校正官’ 卞世謙, 鄭思鈺, 趙重明, 林瑞茂, 金徽重, 朴致倫 등 6명의 倭學譯官이 기재되어 있다. 무진년 개수시 교정에 참여했던 역관들은 1747년에 일본 通信使를 수행한 倭學譯官들로 구성되었다. 몽고어 역학서로 1790년에 간행된 『捷解蒙語』의 교정에는 司譯院司直 方孝彥, 前正 朴尙秀, 前僉正 趙重鎭,

6) 『光海君日記』 光海君 卽位年 10月 26日.

7) 『光海君日記』 光海君 11年 12月 13日.

8) 『光海君日記』 光海君 11年 9月 6日.

前直長 劉漢明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같은 해 『蒙語類解』를 간행 할 때에도 모두 교정에 참여한 인물들로 몽고어에 능통한 자들이었다.

### 3. 교정 참여인원

교정은 한 사람이 전체를 담당할 경우가 있고, 몇 사람이 분량을 나누어 완성한 경우가 있다. 교정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그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많고 적음을 비롯하여 교정 대상의 분량과 교정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간행물의 주제와 간행주관 기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조선시대 서책 중에서 교정기록이 있는 322종을 대상으로 간행 시기별 교정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시대별 서책교정의 참여인원

時代 人員	計	1392~1499	1500~1599	1600~1699	1700~1799	1800~1899	1900~1910
1	155	14	31	32	15	42	21
2	70	5	8	18	9	20	10
3	33	3	2	3	7	15	3
4	11	1		1	5	2	2
5	9				4	3	2
6	7	2			2		3
7	3				1	1	1
8	4			1	3		
9	3				2	1	
10명 이상	19	1			10	7	1
計	314	26	41	55	58	91	43

(교정자가 기관으로 기록된 것과 구체적인 교정인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위 표에서 살펴보면, 1명에 의해 교정된 서책이 155종으로 전체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교정인원이 많아질수록 간행되는 건수는 떨어지고 있

는데, 10명 이상이 참여한 건수는 19종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하였다.

조사된 서책 중에서 1795년에 왕명으로 편찬된 『重刊老乞大』의 간행시에 校檢官 7명과 校整官 20명 등 司譯院 출신의 譯官 27명이 동원되었고, 1782년에 왕명으로 편찬된 『國朝寶鑑』의 간행시에는 校定 2명과 考校 13명, 參訂 31명 등 총 46명이 참여하여 왕명에 의해 간행되는 중앙 관찬본의 교정에 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3명이하의 인원이 참여한 경우가 258건으로 전체의 82%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 全代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선시대 서책의 교정은 일반적으로 3명이하의 소수인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4. 교정관련 용어

일반적으로 서책의 간행에서 ‘校正’의 의미는 종이에 쓰여진 문자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뜻으로 인출 전후의 校訂, 較正, 校閱, 校準, 校勘, 修正, 讐整, 校 등의 용어와도 함께 사용되었다. 대부분 한 두 글자의 뜻이 비슷한 용어가 결합되어 사용되었으나 일부 용어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약간씩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교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다. 또 교정 용어는 서책에 하나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몇 가지 용어가 함께 쓰여 교정자를 구분하여 기록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용어마다 교정하는 분야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서책의 교정기록에 보이는 주요 교정용어의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校正’을 쓰고 있는 것이 221건(6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監校’ 28건(8.7%), ‘校’ 24건(7.5%), ‘校閱’ 15건(4.6%), ‘修正’ 9건(2.8%)의 순으로 많이 쓰였다. 이외에도 사용빈도는 낮지만 25종의 용어를 추가로 확인 할 수 있다.

시대별 용어의 사용현황은 ‘校正’이 朝鮮全代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꾸준히

사용된 반면, ‘監校’는 15~17세기 인본에서 집중되어 나타나고, ‘校’는 16세기 이후부터 20세기까지 계속 사용되었으며, ‘校閱’은 18~20세기 초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校勘’은 조선시대에는 15세기 인본에서 주로 보이는데 고려시대 인본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표 2> 時代別 校正 用語의 使用 頻度

用語 \ 時代	計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1900~1910	未詳
校正	221	17	36	24	43	73	28	
監校	28	8	1	19				
校	24		2	5	4	6	7	
校閱	12				4	1	7	
修正	9			3	1	4	1	
校勘	5	4		1				
考校	5			1	3	1		
校訂	4	1		1		2		
校整	3		1		1		1	
讐正	3				2			1
校印	3				2	1		
校字	2					2		
校對	2			2				
讐整	2				1		1	
重校	2			1		1		
기타	18	2		2	10	7	2	
計	343	32	40	59	71	98	47	1

자주 쓰인 상위 몇 종의 용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용어들의 사용 빈도는 매우 낮아서 ‘校訂’이하 26종의 용어가 쓰인 인본 39종은 전체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용어는 대체로 후대로 갈수록 다양하게 나타나 16세기 이전에는 주로 校正, 監校, 校, 校勘이 주로 쓰였으나 18세기와 19세기에는 10종 이상의 교정용어가 사용되어 교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상의 용어들은 인본의 권수와 권말의 교정기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록과 내각일력 등의 사료에는 이 외에 ‘釐正’, ‘洗補’, ‘校準’ 등도 교정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조사한 서책에서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다만 붓으로 교정지시한 인면이나 권말에 墨書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 5. 교정에 대한 賞罰

교정자에 대한 상벌은 중앙관서에서 주관해서 간행하는 인본에 대한 교정자들에게 시행되었다. 중앙관서의 典籍 印頒을 전담하는 기구에서는 校, 監印 및 校勘하는 이를 두고 철저히 교감을 보았다. 이를 위해 학식이 있는 문신을 監校官으로 두어 교정을 책임지게 하고 문신과 성균관 유생 등을 동원했다. 인출에 있어서 감교관의 역할은 일찍이 세종 때부터 중요하게 여겨 세종 10(1428)년에는 『綱目通鑑』을 인쇄하는데 착오를 많이 일으킨 校書著作郎 蔣敦義와 成均直學 裴杠을 의금부에 가두기까지 하면서<sup>9)</sup> 정교한 인본간행을 위해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주 인본의 착오와 인쇄가 고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中宗 때 『大典後續錄』에 인출에 참여하는 監校官·監印官·唱準·守藏·均字匠과 印出匠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sup>10)</sup> 그 벌칙 조항은 가혹하였으나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된 예가 실록에 보인다. 선조 6년(1573)년에 『皇華集』과 『內訓』의 간행과정에 참여한 匠人과 官人이 推考된 일이 있었는데,

9) 『世宗實錄』世宗 10年 1月 4日.

10) 『大典後續錄』, “서책을 찍어낼 때 監校官·監印官·唱準·守藏·均字匠은 매 권에 한자의 誤字와 錯字가 있을 경우 答 30대를 받고, 한 자마다 한 등씩 더 받는다. 印出匠은 매 권에 한 자의 착오 이외에 먹이 진하거나 희미할 때도 答 30대를 받고, 매 한 자마다 한 등씩 더 받는다. 또 字數를 모두 합친 벌로서 관원은 다섯 자 이상인 경우는 罷黜되고, 장준 이하의 匠人은 죄를 논한 뒤 근무 50일을 삭제하여 감봉하며, 이들은 죄가 사면되기 전에는 다시 쓰지 않는다.”

“근일 찍어 낸 『內訓』과 『皇華集』은 자획이 희미하고 바르지 않아서 정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으니, 교서관의 관원과 인출한 下人을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라.”<sup>11)</sup>

이로 인해 『내훈』을 監印한 校書著作 金祉와 『황화집』을 監印한 校書博士 張文翰은 杖 100대에서 減一等하여 杖 90의 收贖과 罷黜이 결정되었고,<sup>12)</sup> 또 唱準과 印出匠 6명도 杖 100대와 減俸 50일을 당하였다.<sup>13)</sup> 게다가 校書館 提調를 맡고 있었던 柳希春은 이를 사유로 사직을 청하기도 하였다.<sup>14)</sup>

인출시에 교정이 문제가 된 사례는 『內閣日曆』에서도 확인되는데, 정조 22(1798)년의 기사에는 문책뿐만 아니라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杜陸律韻』은 錯誤된 곳이 많아 지금 한창 洗補하고 있습니다. 監印한 諸文臣들은 마땅히 罪를 논해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미 이 일로 인해서 문책된 자가 있고, 또 錯誤된 곳을 누가 準閱하였는가는 기록이 없어 일일이 지목해서 追查하여 죄를 청할 수는 없습니다. 唱準과 守藏均字 印出諸匠은 삼가 大典通編의 勸獎條를 참고하여 매 1권에 3자이상의 錯誤가 있으면 削職하고, 削仕된 무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懲警하는 방법은 없으니 먼저 내각에서부터 別樣으로 다스리고, 이후에는 매번 인출한 책은 某卷某張마다 準閱한 문신과 校正唱準 이하 諸匠의 姓名을 상세히 기록하여 인출을 마친 후에 한결 같이 推考해서 誤錯의 많고 적음을 따라 論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sup>15)</sup>

위의 내용을 보면, 『杜陸律韻』 인출 관계자를 문책하려고 하나 증거자료가 없어서 할 수 없으니, 이후에는 매권의 張마다 準閱한 문신과 校正唱準 이하 諸匠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후 論罪시의 근거자료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이외도 실록 등의 사료에는 교정의 오류로 인해 문책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실록의 기사를 살펴보면, 세조 6(1460)년에 『歷代君鑑』을 교정하는 데 錯誤를

11) 『宣祖實錄』, 宣祖 6年 2月 25日.

12) 柳希春, 『眉巖日記草』, 癸酉 3月 24日.

13) 『上揭書』, 同日.

14) 『宣祖實錄』, 宣祖 6年 2月 26日.

15) 『內閣日曆』, 正祖 22年 11月 16日.

일으킨 校書郎 申卜倫, 校勘 許讓·金良琬, 正字 楊順達 등을 과직하고, 別坐 李壽山·文紹祖 등의 資級을 강등시켰다.<sup>16)</sup> 동왕 10(1464)년에는 『醫方類聚』의 교정에 많은 錯誤를 일으킨 孫昭 등 10인을 罷職시키고, 柳瑤 등의 7인은 과직시킴과 동시에 前仕를 삭제하고, 韓致良 등 46인의 전사를 삭제하며, 安克祥 등 11인은 告身을 빼앗았다.<sup>17)</sup> 또 광해군 1(1609)년에는 醫書의 監印 관원이 讎校를 신중히 하지 않아 착오를 많이 일으킨 監印官들을 국문하였으며,<sup>18)</sup> 순조 즉위(1800)년에는 御製의 便房本 교정을 상세히 하지 않은 閣臣 沈象奎를 畿甸의 바닷가에 유배를 보낸 사례도 있다.<sup>19)</sup>

이처럼 교정 담당자를 문책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褒賞도 이루어졌다. 중앙에서 간행되는 서책의 교정은 해당 관서에 소속된 문신들이 주로 하였으나 지방에 교정을 맡긴 경우도 많았다. 교정에 응한 유생들에게는 주로 서적이나 紙筆墨 등의 물품이 하사되었다. 그러나 가끔 특별한 시험을 열어 성적이 우수한 유생에게는 등용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御題한 詩·賦·箋·義·策의 五體를 내리면서 光州牧使 徐滢修에게 명하여 광주로 가지고 가서 유생들에게 시험 보게 하고, 겸하여 『御定大學衍義』·『衍義補』 및 『朱子大全節約』 등의 책을 내려 보내 유생들을 시켜 교정하여 淨書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유생들이 모두 광주 관아로 와서 응시한 다음, 그 詩券을 수합하여 올려 보냈었다. (중략) 1등을 차지한 高廷鳳·任興源에게는 賜第하고, 그 다음인 朴宗民·鄭胄煥은 初仕로 등용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차등 있게 시상하라는 것 이었다.”<sup>20)</sup>

이 시험에서 1등을 차지한 高廷鳳과 任興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주는 賜第의 포상이 주어졌다.

문신들도 마찬가지로 서책을 비롯한 말, 비단, 뿔나무, 쌀 등의 물품이 교정

16) 『世祖實錄』, 世祖 6年 8月 29日.

17) 『世祖實錄』, 世祖 10年 1月 11日.

18) 『光海君日記』, 光海君 1年 2月 18日.

19) 『純祖實錄』, 純祖 卽位年 10月 20日.

20) 『正祖實錄』, 正祖 22年 6月 18日.

일수와 교정한 張數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고, 때로는 품계를 높여주기도 하였다. 선조 36(1603)년에는 교정에 대한 賞格을 공정히 하기위해 교정 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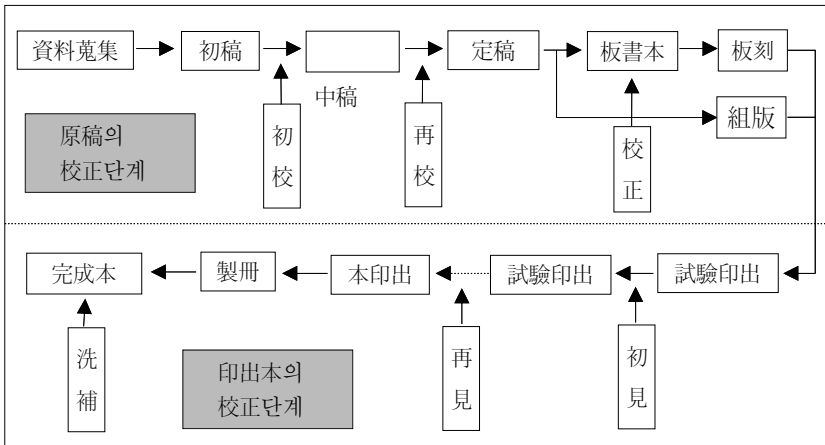
“교정에 대한 賞格은 다시 생각해보니, 하루 일한 사람과 수십일 동안 일한 사람을 똑같이 상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하다. 그리고 낭청을 승직시킨다면 당상들도 승직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후세에 전해줄 책이니 고쳐서 마련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라. 당상들에게는 熟馬를 내리고 洪進·許箴·李好閔·朴弘老·申湜은 아울러 加資하라. 尹根壽는 가장 오래 고생했지만 이미 報國이 되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낭청에게는 아울러 兒馬를 내리라. 康復誠·李德胤·金光燁·尹光啓는 아울러 승직 시키라. 韓百謙도 오랫동안 참여하였으나 이미 資窮이 되어 準職에 있으니 兒馬를 내리라.”<sup>21)</sup>

위의 예시는 교정낭청과 당상의 지위에 따른 차등시상이 아니라 교정한 일수와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말을 하사하고 승직시키는 시상이 이루어졌다.

## 6. 교정의 절차 및 방법

출판에 있어서 교정은 크게 원고의 교정과 인출본의 교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고의 교정은 인쇄하기 전에 자료의 수집과 편집 과정을 거친 후 書寫 과정에서의 오타자를 바로 잡는 것이며, 인출본의 교정은 원고를 淨書한 板書本을 판에 붙여 새겨낸 후 시험 인출 한 校正刷의 교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판의 수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인출 전후의 교정은 정교한 인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서책의 출판 단계별 교정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1) 『宣祖實錄』 宣祖 36年 1月 21日.



<그림 1> 출판물의 단계별 교정

## 6.1 原稿의 교정

원고의 교정은 최종 원고인 定稿本이 완성될 때 까지 이루어진다. 정고본은 저자의 글을 수집·정리해서 최초로 편성한 初稿와 이를 다시 교정하여 재편성한 中稿를 거쳐 최종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 보통 2~3번의 교정을 거친다.

지방에서 간행되는 문집 교정자의 선정은 보통 간행을 의논하는 모임에서 업무를 분장할 때 일차적으로 결정되어 爬任錄에 기록되었다. 교정의 참여방식은 일정분량을 할당받아 직접 교정을 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간접참여는 교정자에 자문과 지적, 교정자 간의 의견대립을 해소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주는 경우다. 교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교정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이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교정자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며 해결하거나 보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제 삼자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가끔 교정자간의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교정과 관련한 모임을 갖고 토론을 거쳤다. 의견대립은 낱글자에서부터 文意에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

였다. 원고의 오탈자는 필사자의 실수로 인한 것도 있지만 원문이 본래 그러한 경우는 저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인지를 판단해야하고, 훼손된 부분의 복원 등의 문제는 반드시 교정자 간의 의견일치를 보아야 했다. 만약 오자라면 어떤 글자로 고쳐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앞뒤의 문장 해석에 따라 수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했다. 혹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어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곧 학문의 우월함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의견 대립이 심할 경우는 이후의 작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sup>22)</sup> 특히 조선시대와 같이 각자의 학문을 고수해가던 문인들 간의 해석은 相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교정 과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교정자 간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교정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있었다. 趙德隣이 『陶山言行錄』의 교정시에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는 원문의 오탈자 수백 자를 바로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고, 『朱書考異』처럼 오탈자가 분명하고 그로 인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은 따로 목판으로 찍어 각 편의 말미에 붙이고, 사소한 문장이나 방점 같은 것은 비록 다른 것이 있어도 전부 거론하지 말자고 하여 선현의 글을 멋대로 손댈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sup>23)</sup>

문집의 교정에서는 항상 잘못된 교정으로 인해 저자의 本意에 어긋나지 않을 까를 염려하여 『주서고이』처럼 원문에는 손대지 않는 다른 방법이 모색되었고, 頭註나 본문의 문장 중에 교정자의 의견을 기록해 두는 것에서 그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교정은 書寫과정의 실수에 의한 오탈자를 바로잡는 것뿐만이 아니었으며, 또 단순히 저자의 유문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저술을 후손이나 문인들의 학문성향에 따라 재해석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교정시의 의견 대립과 절충의 과정을 통해서 스승의 학문을 정리하고 아울러 문인들의 학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원고본의 실제 교정 사례는 『水月逸稿』<sup>24)</sup>의 교정본에서 확인하였다. 여기에

22) 『俛庵集』 卷3, 答權季周, 權訪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감시에 이견을 조율할만한 확실한 의견이 없어 출간이 미뤄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23) 『玉川集』 卷5, 答陶山士林.

는 교정을 지시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원고의 교정 방법과 그 수준을 살펴 볼 수 있다. 교정지시는 朱沙로 했으며 다양한 부호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정지시한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목활자본 『水月逸稿』와 대조하여 교정방법과 기호를 확인하였다.

- ① 빈 공간 삭제 : 삭제할 공간에 세로로 선을 긋는다.
- ② 내용 삭제 : 삭제할 내용을 ( )로 묶는다.
- ③ 내용 바꾸기 : 바꿀 내용을 ( )로 묶고 옆이나 아래 혹은 난상에 내용을 기입한다.
- ④ 목차 순서 바꾸기 : 목차 첫 글자 우측에 작은 글씨로 一, 二, 三, ... 등으로 바꿀 순서를 표시한다.
- ⑤ 행 삽입 : 삽입할 행 사이의 계선위에 내용을 기입한다.
- ⑥ 획 제거 : 삭제할 획에 덧칠하거나 작은 동그라미를 한다.
- ⑦ 글자 위치 바꿈 : 바꿀 아래 위 글자 우측에 위로 옮길 글자에는 위로 빼침 선(ㄷ)을 하고 아래로 옮길 글자에는 아래로 선(ㄹ)을 빼친다.
- ⑧ 획 수정 : 잘못 쓴 획 위에 겹쳐서 고쳐 썼다.
- ⑨ 날개 글자 삭제 : 글자 위에 점을 찍거나 ( )표시, 혹은 오려낸다.
- ⑩ 내용 추가 : 추가할 위치에 점을 찍고 바로 옆에 써 두거나 공간이 있으면 위치에 맞게 써넣는다.
- ⑪ 글자 수정 : 고칠 글자에 점을 찍고 난상에 쓰거나 칼로 오려내고 종이를 위 혹은 아래에 붙여서 글자를 써 넣는다(오려내고 수정하는 경우는 한 글자에서 최대 1행 전체까지 이루어졌다).
- ⑫ 교정 지시 취소 : 교정 표시에 긴 점을 두 개 혹은 한 개를 찍었다.

이상의 내용이 교정 지시된 주요 사례를 『수월일고』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24) 경북대 중앙도서관 소장.

<표 3> 「水月逸稿」의 주요 교정사례

①빈 공간 삭제	②내용 삭제	③내용 바꾸기	④목차순서 바꿈
⑤행 삽입	⑥획 제거	⑦글자 위치 바꿈	⑦글자 위치 바꿈
⑧획 수정	⑧획 수정	⑨날개 글자 삭제	⑨날개 글자 삭제
⑨날개 글자삭제	⑩내용 추가	⑩내용 추가	⑪글자 수정
⑪글자 수정	⑪글자 수정	⑪글자 수정	⑫교정지시 취소
문장으로 교정 지시			

부호를 쓰지 않고 문장으로 교정지시한 경우는 편집상의 오류로 인한 편차의 이동과 같이 간단한 부호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관한 수정이며, 이는 수정할 위치의 난상에 朱書하였다. 이 경우는 교정자마다 기재방식이 다르지만 최대한 간결한 문장형태를 취하였다.

『수월일고』의 원고는 두 번의 교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교정에서 오자와 내용 수정 등은 칼로 오려 내거나 종이를 덧 붙여 써넣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두 번째 교정에서는 주사로 교정 부호를 써서 교정하였다. 종이를 덧붙인 경우는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졌으며, 한 행 전체를 오려내고 수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교정된 『수월일고』의 원고 교정본은 이후 인출에 충실히 반영되었다. 그러나 일부분에서는 교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곳이 있고, 또 교정지시가 없는 부분이 수정된 곳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조판하는 순간까지도 교정 작업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6.2 板書本의 교정

정고본이 완성된 후 이를 上板하기 위해서는 얇은 종이에 다시 옮겨 써야한다. 筆寫는 글을 잘 쓰는 이가 맡아서 혼자 많은 분량을 써야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필사를 마친 판서본은 다시 정고본과 대조하여 필사과정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완성된 필사본에서 혹 틀린 글자나 빠진 글자,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상판하기 전에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서한 후에도 여러 차례의 점검이 이루어진다. 판서본에서 발견된 작은 오류의 경우에는 사본에 직접 수정하지만 수정할 부분이 많으면 그 장은 다시 써야했다.

1884년 『大溪先生文集』을 간행할 때 작업진행 상황을 기록한 『大溪李周禎文集刊役時日記』에는 문집의 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판서본의 작성과 교정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1884년>

5월 28일 : 문자를 교정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워서 지금 이 교정본도 여러 번 식견이 높은 사람의 안목을 거쳐 수정·윤색과 교감한 것이 몇 년이 걸렸는데도 아직도 자체가 서로 비슷한 오류가 있다. 지금 간본을 필사할 때도 항상 이런 점에 눈을 두고 살펴 연마하고 준비하지만 그래도 혹 살피지 못하고 빠뜨린 곳이 있을까 염려하여 집안사람 중에 문자학에 밝거나 깊이 연구한 자를 시켜 돌려보게 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는데도 교정하지 못한 곳이 또 보였다.

10월 13일 : 필사한 서문 14장을永이 찾아 왔다. 제1장에서 편을 나눈 제목에 줄이 누락되어 있고 그 아래 간간이 빠뜨린 곳이 있기 때문에 글줄을 따라 칼로 오려내고 그 순서를 바꾸고 풀칠하여 篇帙을 완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옮기고 고치는 즈음에 쉽게 정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다 또 글자마다 빠뜨려진 경우에는 구마다 칼로 오려 위아래로 바꾸는 작업이 참으로 어려웠다.

10월 19일 : 잘못 필사한 곳의 고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쓰게 하였다.

<1885년>

1월 3일 : 인쇄한 교정본을 보니 글자가 혹 범칙을 잃었고 또 빠진 획도 많았다. ‘答金溪金丈書’에는 ‘事’자 한 글자가 빠져있고, 또 ‘答李進士書’에는 ‘而’자 한 글자가 빠져 있었다. 이는 간본을 필사할 때에 빠진 것이고, 대조하여 볼 때에도 살피지 못한 것이다. 필사한 뒤에 돌려가며 본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이 많았지만 아직도 이런 오류가 있으니, 교정 하는 작업은 실로 대충대충 보고 감자기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1월 13일 : 간본 15장을 가지고 왔다. 간혹 빠지고 잘못되고 뒤 바뀐 곳이 있었다. 빠진 곳은 칼로 전폭을 오려내어 차례로 옮겨 내리고 그 빠진 곳은 메우고, 틀린 부분은 풀칠하여 고치고, 뒤바뀐 부분은 아래에 것을 옮겨 위의 것과 바꾸었다. 이와 같은 종류가 무릇 두 세 곳이나 되었다.

2월 28일 : 어제 가져온 간본 46장에서 틀린 곳이 10자에 이르렀다.

3월 7일 : 각수가 와서 간본을 찾았으나 정밀하게 교정보지 못하여 4장만 우선

주고, 13일 날 8장을 보냈다. 연일 교정하여 잘못 필사한 것을 모두 고쳤다.

4월 15일 : 필사한 간본 1장을 고쳤다.

4월 29일 : 간본 11장을 각수에게 전하고, 제4편은 아직 교감이 끝나지 않아 보내지 못했다.

8월 1일 : 간본을 계속 이어서 보내지 못해서 여러 날을 기다리다가 각수의 아버지가 간본을 가지러 왔다.

8월 19일 : 각수가 간본을 달라고 독촉하였다.

8월 23일 : 행장문을 교감하려고 도양을 시켜 율성의 숙부를 오게 했다. 청각에 모여 사본을 대조해 보니 東湖公 행장에 두서너 글자가 빠지고 틀린 곳이 있었다.

위의 내용을 기록한 이는 간본(판서본)이 작성되기 전에 원고를 최종 교정하여 筆寫者에게 건네주고, 또 筆寫해 온 간본은 다시 교정한 후에 각수에게 주었다. 간본에는 필사과정의 실수로 누락된 글자나 문장, 틀린 글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이루어진 후에 상관이 이루어져야 했다. 판서본의 수정 방법은 1884년 10월 13일과 1885년 1월 13일의 기록에서 상세히 보인다.

### 6.3 底本の 교정

처음 간행되는 서책은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편집과 교정을 거친 후에 인출을 위한 원고가 마련되지만 이미 간행되어 완성된 책을 이후에 다시 간행할 경우에는 이 같은 과정은 많이 생략된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전래된 性理書나 불경 등은 그대로 翻刻하거나 謄寫해서 간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초간본에서 나타나는 내용 교정과는 같지 않다. 때문에 이미 편집과 교정을 거쳐 간행된 책을 저본으로 삼았을 때는 저본에 대한 교정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유행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사서삼경을 비롯한 주자의 성리학서가 과거시험의 주요 과목으로 채택되어 중앙을 비롯한 各地에서 간행 유통되었다. 이 과정에는 성리학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이 교정에 참여하여 異本

과의 대교와 고증을 거쳐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여 간행하기도 하였고, 편찬 의도에 따라 내용을 빼거나 추가하여 판중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정조 20(1796)년에 『小學』의 儀例를 內閣으로 하여금 주관케 하고 李秉模, 李晩秀 등의 諸臣에게 교정하게 하였는데, 이때 정조는 『訓義小學』에 朱子의 本註를 집어넣고, 集註 중에서 쓸데없이 긴 것은 전부 빼서 소주에 넣거나 주자의 본의와 다르게 편집된 것은 제거하여 주자의 본의가 표출 될 수 있도록 하며, 또 주자의 말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취하여 첨가해 넣게 하였으며, 本文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손대지 않도록 하는 교정에 관한 지침을 내렸다.<sup>25)</sup> 이때에 간행된 『小學諸家集註』는 영조때의 『훈의소학』을 저본으로 그 의례를 교정하여 간행한 것으로 내용의 추가와 삭제가 이루어진 후에 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간행본에서는 오류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하지 않고 그 내용만을 따로 판에 새겨서 함께 수록해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을 때는 그대로 두어 후학의 과제로 남겨둔 것이며 원문에 대한 신중한 교정을 드러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저본의 고증에 의해 오류로 확인된 글자나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그 책에 수록한 방식은 몇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확인된 내용을 모두 모아 판에 새겨서 권말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그림 2>의 『朱子書節要』<sup>26)</sup>는 이황이 朱熹의 『朱子大全』에서 서간문을 편집한 것으로 1578년에 錦城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 책의 권말에는 권차, 서간문의 제목, 대상글자가 포함된 본문구절, 오자, 고증한 내용의 순으로 매 권마다 오자로 의심되는 글자에 대한 고증의 결과를 모아 수록하고 있다. <그림 2>의 『論語孟子或問』은 주희가 『論語』와 『孟子』의 大文에 대하여 스스로 묻고 답한 것으로<sup>27)</sup> 고증의 결과를 앞의 『주자서절요』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여 권말에 첨부한 것이다. 異本과의 대조와 검증을 거친 후에 오류를 수정 인출하지 않은 것은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전하여 저자의 의도를 그르치는 실수를

25) 『正祖實錄』, 正祖 20年 12月 13日.

26) 개인소장본.

27) 개인소장본.

피하기 위한 것이다. 고증의 결과를 따로 판에 새겨서 첨부하는 방식은 이후 퇴계의 『陶山言行錄』의 교정시에도 논의되어 선현의 글에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주자서절요』가 간행방법의 예로 제시되기도 하였다.<sup>28)</sup>



「朱子書節要」



「論語孟子或問」別考

<그림 2> 고증한 내용을 권말에 수록한 경우

또 다른 방법은 확인된 내용을 본문 중에 수록하는 것으로 오류로 의심되는 글자가 위치한 부분의 난상에 기록하는 방법과 본문의 문장 끝 부분에 小字로 기록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는 <표 4>에서 예시한 1843년 간본의 『訥齋集』에서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1415년 安巖寺에서 간행한 『金剛般若波羅密經』에서 확인된다. 이때의 기록 방식을 몇 가지 예시하면, ‘鑑他本/作畚’, ‘恒當/作多’, ‘嗟一/作嗟’와 같이 간략한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본문 중에 명백한 오류로 판단된 경우는 ‘○當作○’와 같은 형태를 취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他本의 상황을 소개했을 뿐 경솔한 판단을 내리지

28) 『玉川集』卷5 「答陶山士林」.

않고 있어서 교정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6.4 印出本の 교정

원고의 교정이 끝나면 교정된 원고는 인출방식에 따라 판서본을 제작해서 목판에 붙여 새겨 내거나 원고에 따라 활자를 배열해서 인출하게 된다. 그러나 판각과 조판의 상태에 의해 인쇄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출에 앞서서도 몇 번의 교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는 주로 판각과 조판상의 실수로 인한 부분의 수정과 印面의 먹 상태 등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원고 교정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탈자의 교정도 함께 이루어진다. 인출본의 교정은 보통 두세 번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차례에 따라 初見, 再見, 三見으로 구분하여 朱書나 墨書로 교정을 지시하였다.

### 6.4.1 목판본의 교정

인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단계적인 판각과 교정을 반복하면서 완성하게 된다. 그 과정은 먼저 板書本을 上板하여 변란의 윤곽을 새기고 이후에 글자 부분을 전문 각수가 초별로 새기게 된다. 초벌 새김이 끝나면 먹을 발라 인출하여 판각 상태를 살펴 교정한 다음에 諸刻手들이 글자 밖의 바탕을 파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初見은 이 중 전문 각수의 초벌 새김이 끝난 후 시험 인출한 교정쇄를 수정하는 단계로 글자를 중심으로 계선과 어미, 판심제, 장차 등만을 남기고 주위 부분을 먼저 새겨내고 나머지 변란 밖의 바탕 부분과 판심 부근은 그대로 둔 채로 교정하였다.<sup>29)</sup> 이때의 교정은 주로 판각상의 실수를 바로잡는데, 획의 길이와 굵기, 떨어져나간 부분, 잘못된 글자, 빠진 글자 보충, 높이 등 인쇄가 고르지 못한 부분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진다. 刻字에 대한 교정이 끝나면 다시 인쇄하여

29) 南權熙, “古版畫博物館 所藏 五倫行實圖 木板의 飜刻刊行에 대한 研究,” 『한국의 고판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2005), 274.

오자와 탈자를 바로 잡는다. 잘못 판단한 글자의 수정은 오자를 口자로 도려내고 새로 새긴 글자에 아교를 발라 끼워 넣었다. 여러 글자를 고쳐야 할 경우는 잘못된 글자 전체를 U자형으로 길게 도려내고 새로 連刻한 글자를 끼워 넣었다. 그러나 많은 내용의 추가 혹은 삭제가 필요한 경우는 나머지 행이 밀리거나 당겨져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판 전체를 새로 새겼다.

교정쇄의 수정지시는 주로 주사로 표시하고, 수정지시에 따라 교정을 마치고 나면 교정쇄는 없애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따로 보관해 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교정쇄를 모아 책으로 엮어 두었거나 책표지로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초·재건의 교정지시 방법을 살펴 볼 수 있다.



本文의 初見紙



插花의 初見紙

<그림 3> 「五倫行實圖」 飜刻本の 初見紙

<그림 3>은 정조 21(1797)년에 李秉模 등이 왕명으로 간행한 整理字本 『五倫行實圖』를 철종 10(1859)년에 번각 할 때의 교정쇄로 여기에는 잘못 판단된 여러

곳을 교정지시 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교정지시 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교정쇄본의 표지 안쪽 면에는 ‘初見’이라 필사되어 있어 전문 각수가 초벌새김을 한 후 처음 교정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초견은 매 장별로 하여 먼저 글자를 중심으로 계선과 어미, 판심제, 장차 등만을 남기고 주위부분을 새겨내고 나머지 변란 밖의 바탕 부분과 판심부근은 그대로 둔 채로 시험 인출하여 교정하였다. 이 교정쇄에 의해 목판본의 순차적인 교정과 판화부분의 미세한 오류까지 교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초벌새김으로 초견을 보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제각수들이 깎아 내고 다시 인출해서 再見을 보게 된다.

시험인출 한 목판본 본문의 교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경북대학교에 소장된 朴祥(1474-1530)의 문집인 『訥齋集』의 교정쇄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 교정쇄본은 1843년에 『눌재집』을 네 번째로 간행할 때의 교정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정이 완료된 후에 제책을 위해 일정한 규격으로 위아래를 잘라내어 書尾와 犀角 부분의 교정내용은 조금씩 잘린 상태다. 본문에는 탈획과 획 추가, 오자수정, 문장과 글자 이동, 내용 추가 및 삭제 등의 교정을 주사와 墨書로 지시하고 있다. 이 교정쇄본과 이를 수정해서 인출한 장서각 소장의 『눌재집』을 대조하여 교정에 사용된 부호와 방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목판본의 교정은 획의 수정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 바 『눌재집』에서도 획의 교정을 지시한 부분이 600건 이상이 확인되었다. 『눌재집』 교정쇄의 교정표시 방법과 교정부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정을 글로 표시할 경우 : 교정할 줄의 난상 여백에 ‘○當作○’ 혹은 ‘○當改○’, ‘○誤當○’ ‘○○之誤’, ‘○○誤’ ‘○改○’, ‘此語當刪’ 등으로 표기하여 글자의 수정을 지시
- ② 교정 취소 : 표시했던 교정 글귀에 동그라미 표시
- ③ 글자 수정 : 해당글자에 동그라미를 하고 바로 옆이나 변란 위아래 여백에 수정할 글자를 써둠
- ④ 글자 삭제 : 삭제할 글자를 주색으로 덧칠.

- ⑤ 탈획 수정 : 해당 글자 옆에 ‘ㄹ’을 찍고 끊어진 획이나 빠진 획 부분에 붉은색으로 보충할 것을 표시(점을 찍지 않은 경우도 있음), 변란 위아래에 수정할 획이 있는 글자를 쓰고 빠진 획을 보충(해당 글자에 점만 찍고 보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⑥ 추가된 획 또는 늘어진 획 삭제 : 제거해야 할 획 부분에 붉은 색으로 덧칠하거나 동그라미표시, 변란 밖에 해당 글자를 쓰고 제거할 획에 점을 찍음
- ⑦ 내용 추가 : 추가할 위치에 여백이 많을 경우 ( )를 하고 내용 추가를 지시하거나 혹은 ( )없이 내용 추가 지시
- ⑧ 날개 글자 추가 : 추가할 위치에 ‘ㅇ’를 표시하고 난상에 글자를 씌움
- ⑩ 頭註의 테두리 선 삭제 : 선을 따라 붉은 색으로 덧칠
- ⑪ 문장으로 수정지시 : 난상에 간략한 문장으로 기술

이상의 내용이 교정 지시된 주요 사례를 『訥齋集』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4> 「訥齋集」의 주요 교정지시 사례

			
난상 내용 추가	내용 삭제	난상 내용 삭제	난상 내용 삭제
			
내용 삭제	변란 삭제	탈획 보충	탈획 보충

			
탈획 보충	추가된 획 삭제	난상에 탈획 수정	목등 보충
			
내용 추가	내용 추가	난하에 탈획 수정	난상에 교정지시
			
난상에 교정지시	교정 지시 취소		

『눌재집』의 교정쇄본은 일일이 교정을 지시하고 있으며 책 전체에 교정이 표시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교정되어 조선시대 개인문집 교정이 얼마나 철저히 교정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6.4.2 활자본의 교정

활자본은 목판과 달리 글자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작된 활자를 원고에 따라 활판에 배열하여 인출하기 때문에 교정에 있어서도 목판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활자본의 인판수정은 목판에서의 校正刻手 대신에 校正唱準과 均字匠이 참여하였고, 주요 교정대상에 있어서도 글자 획의 수정이 목판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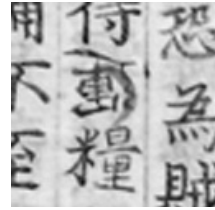
훨씬 적게 나타나며, 조판상의 실수로 빚어지는 빼뚫어졌거나 뒤집혀진 글자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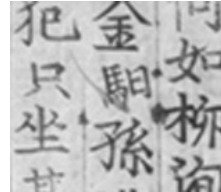
<그림 4> 「資治通鑑」의 校正紙



루자 바로 세우기



運자 바로 세우기



기울어진 駟자  
바로 세우기



日자와 上자 사이를  
한 칸 띄우기

<그림 5> 「成宗康靖大王實錄」의 교정 사례

조판을 담당하는 창준과 균자장은 인출상태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이가 선정되었다. 교정자에 의해 초견이나 재견의 교정지시가 끝나면 교정 지시된 교정지에 의해 실제 판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교정창준과 균자장이 함께 참여하였다. 목판의 校正刻手는 교정 지시된 교정지에 의해 보각 혹은 삭제 등의 방법으로 수정 하였으나, 활자본에서 교정창준과 균자장은 활판을 재조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끔 교정지에는 이들의 이름을 朱書로 기록해 둔 경우도 있다. <그림 4>의 교정지는 戊申字本の 교정지로 오른쪽에 ‘校正 高奉乾’과 ‘均字 李厚百’이 서명하여 책임자를 밝히고 있다. 이는 활자본의 교정에 균자장의 역할이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견으로 인판의 1차 수정이 마무리 되면, 인출해서 한 번 더 교정을 보게

되는데 이를 再見이라 하고 초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단계이다. 재견 후에도 필요에 따라 또 한 번의 교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 6.5 完成本の 교정

### 6.5.1 完成本 수정작업

원고와 시험 인출본의 교정을 거쳐 최종 완성된 인본은 간행에 참여했던 인물과 주요 기관에 나누어 주게 된다. 그러나 몇 차례의 교정을 거쳤음에도 완성된 인본의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기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반사했던 서책을 모두 회수해서 洗補 한 뒤에 다시 나누어 준 예도 있었다.

인출이 완료된 인본에서 발견된 오류는 초·재견과 같은 교정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였다. 수정하는 방법은 오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간단한 자획에 그친다면 붓으로 加筆하거나 칼로 긁어 제거하였다. 제거해야 할 획을 칼로 오려낸 경우는 白紙를 붙여두거나 그 부분에 추가해야 할 획을 붓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한두 자 이상의 글자가 완전히 잘못 쓰였을 경우에는 오자를 칼로 오려내고 종이를 아래에 붙이거나 잘못된 글자 위에 종이를 덧 붙여서 수정하였다.

목판의 경우는 붙인 종이 위에 수정할 글자를 붓으로 써 넣었으나 활자본의 경우에는 오려낸 부분에 종이를 붙이고 해당하는 활자에 먹을 발라 직접 찍었다. 또 다른 방법은 필요한 글자를 활판에 배열하여 한꺼번에 찍어 낸 후에 이것을 잘라서 해당하는 부분에 붙이는 것이다. 오려내지 않고 수정할 경우는 칼로 오자를 얇게 긁어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활자에 먹을 발라서 찍었다.



<그림 6> 교정용 인쇄지와 교정사례

### 6.5.2 別紙 교정

고서의 교정은 이상과 같이 인본에 오탈자가 없는 완벽한 출판물을 생산하기 위해 조금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정자가 아무리 철저하게 교정하더라도 미처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미 완성된 책을 이전처럼 인판을 수정해서 교정 간행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조선후기에 들어 자주 쓰인 또 다른 교정방법 중의 하나가 別紙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별지에 의한 교정은 본문의 내용을 일일이 수정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과 수정할 내용을 별도의 종이에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간략한 문장이나 표로 작성해서 권말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30) 국립진주박물관, 『목활자로 보는 옛 인쇄문화』(진주: 진주박물관, 2004), 50.

작성양식은 별지를 이용해서 교정한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었다. 기록 방식은 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세부항목은 卷次, 張次, 行, 誤, 正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오자와 글자추가, 삭제 등 잘못된 부분의 위치와 오류의 내용을 표시하고 바로잡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또 문장으로 간략하게 기록한 경우도 있다. 1907년에 간행된 『廣陵世稿』의 권말에는 ‘廣陵世稿二編六十一頁第/一行第一字至六十三頁第/七行第一字例用一字低下/格而誤植故改正(『廣陵世稿』 2편 61쪽 제1행 제1자에서부터 63쪽 제7행 제1자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모두 1자 아래로 내려진 誤植이 있어서 改正한다)’라고 하였다.

별지를 이용한 교정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류의 수정이 아니라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인본의 완벽함을 추구했던 조선중기까지는 이 같은 방법의 교정은 허용되지 않았고 날개 글자의 결합이 적어서 이에 대한 교정 부담이 비교적 적은 목활자와 신식활자의 사용이 증가하고, 출판량이 급증하여 이전처럼 일일이 교정할 수 없게 되는 조선 말기가 되어서야 실용화 될 수 있었다.

## 7. 맺음말

조선시대 중앙에서는 校書館, 鑄字所, 校正廳, 實錄廳 등 출판을 전담한 기관이 있었고, 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는 아니었으나 司譯院이나 內醫院, 觀象監 등에서도 주 업무와 관련한 주제 분야의 서책을 왕명에 의해 간행하였다. 이러한 기관에서 간행되는 서책은 반드시 교정의 단계를 거쳤으며, 교정은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본이 완성되어 반사될 때 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중앙관서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찰을 비롯한 문중과 서원, 사가에서 출판되는 간행물 역시 교정의 과정을 거쳤다.

교정자의 신분은 간행처에 따라 차이를 보여 私家에서 간행되는 문집과 족보의 교정은 주로 幼學의 신분으로 자손에 의해 교정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지방 관청 간행물의 교정은 파견된 관리와 생원, 진사 등 검증된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중앙관서에서는 해당 기관의 관원과 抄啓文臣, 成均館 儒生들이 참여하였다.

校正에 참여한 인원수는 서책의 종류와 간행주관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앙에서 간행되는 서책은 왕명에 의해 간행되어 비교적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御製書의 경우는 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수십명이 참여한 경우도 많았다. 또 司譯院에서 간행된 譯學書는 11종 가운데 6종이 5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학서는 대부분 두 명의 교정자로 구성되었다. 私家에서 간행된 문집과 족보의 교정은 1명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찰판 佛書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책의 교정은 3인 이하 소수인원의 참여가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용어는 시대별로 약간의 다른 양상을 보여 監校와 校勘, 校閱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쓰였으나, '校正'은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꾸준히 사용되었다. 대체로 후대로 갈수록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책의 교정자에 대한 상벌은 중앙관서에서 간행되는 서책의 교정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에서는 서책의 철저한 교정을 위해 「大典續錄」과 「後續錄」에 서적 인출시의 교정과 관련하여 벌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교정을 철저히 하지 않은 담당자를 문책하였다. 문책과 아울러 포상도 이루어졌다. 포상은 교정 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져 주로 물품과 말이 하사되었고 품계를 올려주기도 하였다. 지방에 의뢰하여 참여한 유생들에게도 서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이 하사되었고, 가끔 시험을 통한 등용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교정의 단계는 크게 원고와 인출본의 교정으로 나누어진다. 원고의 교정은 보통 初校·再校의 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새겨진 판은 시험 인출한 교정쇄를 통하여 初見과 再見의 과정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인출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책에서 또 오류가 발생하면 洗補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완성된 책의 교정은 그 책에 직접 수정하거나 別紙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

로 이루어졌다. 간단한 자획의 오류는 붓으로 가필하거나 얇게 긁어서 제거하였으며, 몇 글자 이상의 수정은 칼로 오려내고 종이를 위 혹은 아래에 붙인 후에 수정하였다.

### <참고문헌>

『內閣日曆』

『訥齋集』

『大典後續錄』

『俛庵集』

『眉巖日記草』

『玉川集』

국립진주박물관. 『목활자로 보는 옛 인쇄문화』. 진주 : 진주박물관. 2004.

南權熙. “古版畫博物館 所藏 五倫行實圖 木板의 飜刻刊行에 대한 研究.” 『한국의 고판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2005.

안병희. “석보상절의 교정에 대하여.” 『국어학』 제2집. 1974.